

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1월 10일 신석철, 김한태 의원 등 11인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1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2011. 1. 17)
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)

제안이유

-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대하여 특례 적용. (안 제4조제2항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문	답 변
○ 타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허가 및 신고사항 모두 완화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경우에 비하여 우리시에서는 신고사항만 완화하는 사유는 무엇인지?	○ 우리시에서는 위탁시설이나 숙박시설의 난립을 제한하기 위하여 신고사항에 대하여 완화하고자 함.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106
의결 년월일	2011. 1. 19

발의연월일 : 2011. 1. 17.

발 의 자 : 건설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미달되는 기존 건축물은 용도변경이 쉬워 유흥주점(위락시설)과 숙박 러브호텔(숙박시설) 난립이 예상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,
-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, 기 용도변경 처리된 사항과의 형평성 문제와 중·상동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 허용용도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개정 조례안의 특례조항을 “다만, 2006년 5월9일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법 제19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제27조의2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” 내용으로 수정함. (안 제4조제2항)

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2항 중 “다만, 2006년 5월 9일 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27조의2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”를 “다만,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법 제19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제27조의2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”로 한다.

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『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·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. 다만,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법 제19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제27조의2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